

2018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신포동 · 신흥동 · 율목동 · 운서동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

2018년 자체감사 결과보고

I

감사실시 개요

- ❖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구민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감사 대상 및 기간 등

- 기 간 : 2018. 3. 5 ~ 2018. 5. 15
- 대 상 : 5개 기관(동 행정복지센터)
- 감사범위 : 2015. 9월 ~ 2018. 3월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 대상별 세부내역

수범기관명	감사종류	감사기간	수범기간
신 포 동	종합감사	2018. 3. 5 ~ 3. 9	2016. 10 ~ 2018. 2
신 흥 동	종합감사	2018. 3. 19 ~ 3. 23	2016. 10 ~ 2018. 2
울 목 동	종합감사	2018. 4. 2 ~ 4. 6	2016. 11 ~ 2018. 3
운 서 동	종합감사	2018. 4. 23 ~ 4. 27	2015. 10 ~ 2018. 3
용 유 동	종합감사	2018. 5. 9 ~ 5. 15	2015. 9 ~ 2018. 3

□ 감사 중점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각종 회계업무 처리 및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 여부

- 민원 및 일반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령(지침) 준수
 -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사후조치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에 중점

II

감사결과

1. 총 평

- 이번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규칙」에 의거, 감사주기(2년)이 도래한 기관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구민행정 실현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민원 최일선에서 점차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업무에 대한 규정 준수 소홀로 예산·회계, 민원행정, 일반행정의 각 분야에서 5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1건, 주의 36건**, 재정상 조치로는 **1,840천원 회수, 458천원 추징, 32천원 환급** 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동에서는 담당 직원이 관련 법규나 지침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처분내역 총괄

구분 기관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건)					신분상 (명/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환급	지급	
계	57	21	36	-	2,330/10	458/3	1,840/5	32/2	-	-
신포동	10	1	9	-	270/1	-	270/1	-	-	-
신흥동	12	5	7	-	478/2	8/1	470/1	-	-	-
율목동	11	5	6	-	524/2	-	500/1	24/1	-	-
운서동	12	4	8	-	640/2	210/1	430/1	-	-	-
용유동	12	6	6	-	418/3	240/1	170/1	8/1	-	-

3. 지적 사항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분야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원)
1	예산회계	회계관계직원 변경 부적정	신포동		주의	
2	"	출장여비 부당 지출	신포동 포항서무유 영유동		시정	회수 (1,840,000원)
3	"	특근매식비 지출 업무 소홀	신포동 포항북 영유동		주의	
4	"	신용카드 사용요령 미준수	신포동		주의	
5	"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처리 소홀	신포동 포항북 영유동		주의	
6	"	하자검사 업무 소홀	신포동 포항서무유 영유동		시정	
7	"	계약관련 채권자 영수처리 소홀	신포동 서무유 영유동		주의	

연 번	분야 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원)
8	"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운 서 등		주의	
9	"	공사계약 시 계약서류 미첨부	운 서 등		주의	
10	"	약식지급명령 처리 규정 위반	운 서 등		주의	
11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운 서 등		시정	추정 (410,000원)
12	일반행정	통반장 쓰레기봉투 중복 지급	신공 포 등		주의	
13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신신 포 등		주의	
14	"	민방위 자체교육훈련 인정대상자 관리 소홀	신예운 포 등		시정	
15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처리 부적정	신공운 포 등		주의	
16	"	차량유지관리 부적정	운공 서 등		시정	
17	민원행정	인감위임장 작성 확인 소홀	신신공운 포 등		주의	
18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업무 처리 부적정	신신공운 포 등		주의	
19	"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신 공 등		시정	추정 (8,400원)
20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인증처리 부적정	운 서 등		주의	
21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운 서 등		주의	
22	"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리 부적정	운공 운 등		시정	환급32,000원 추정40,000원
23	복지행정	청소년증 교부 및 관리 소홀	신신공운 포 등		주의	
24	"	통합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이용 제공 동의 누락	신 공 등		시정	
25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부적정	운 공 등		시정	
26	"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소홀	운 공 등		시정	

● 주요 지적사항[요약]

가 예산·회계 분야

1. 회계관계직원 변경 부적정 [신포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4항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출원인 주민생활지원 담당의 연가(특별휴가) 시 회계 공무원의 변경지정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3건의 지출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연가 중에 승인한 사실이 있음.

2. 출장여비 부당 지출 [신포동, 신흥동, 울목동, 운서동, 용유동]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수(신포동 270천원/신흥동 470천원/울목동500 천원/운서동 430천원/용유동 170천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항에 의하면,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7건에 대해 출장명령 시간에 전자결재 상의 전자 업무를 시행하여 총 270,000원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의혹이 있고, 신흥동에서는 47건(470,000원), 운서동에서는 38건(430,000원), 율목동에서는 50건(500,000원)에 대해 각각 부당출장 의혹이 있으며,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출장 명령 시간에 전자결재 상의 전자 업무를 시행(15건, 155,000원)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장한 일수(1건, 15,000원)를 산입하여 월액 여비를 지출하는 등 출장여비(총 16건, 170,000원)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의혹이 있음.

3. 특근매식비 지출업무 소홀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에 의하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는 13건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근매식비를 지출하는 등 3개동 총 30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계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30건	13건	12건	5건

4. 신용카드 사용요령 미준수 [신포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1.23. 발급받은 통신료 및 우편료 납부 목적의 법인공용카드 2개를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발급대장의 별표 제1호 서식과 다르게 결재에 담당, 동장만이 있고 담당자가 누락되어 보고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

5. 구입물품에 대한 검수처리 소홀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125조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매입에 따른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동에서는 총 39건에 대해 물품에 대한 규격, 수량 등에 대한 확인 등 지출결의서의 검수 날인을 통한 물품검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계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용유동
39건	9건	10건	15건	5건

6. 하자검사 업무 소홀 [신흥동, 율목동, 운서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동에서는 총 19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계	신흥동	율목동	운서동	용유동
19건	4건	3건	6건	6건

7. 계약관련 채권자 영수처리 소홀 [운서동, 율목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에 의하면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동에서는 총 21건의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련 지출 업무 시 지출결의서에 채권자의 영수인을 날인하거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음.

계	율목동	운서동	용유동
21건	2건	9건	10건

8.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운서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는 제19회 영종도 주민의 날 기념행사 식전공연 참가자 및 종사자 매식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9. 공사계약시 계약서류 미첨부 [운서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는 운서동 청사 개청식 용역을 체결하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통 마을회관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10. 약식지급명령 처리규정 위반 [운서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2017.9.29. 개정 전)」 제51조(지급명령의 요건)에 의하면 “제1항의 지급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는 2015. 10월 ~ 12월, 2016. 2월 ~ 2017. 9. 28까지 약식지급명령 서식에 지출원이 직인·사인을 날인하지 않았고, 담당자 날인도 누락되었음에도 금고에서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1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운서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410천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

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운서동 및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각 4건씩 총 8건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410,000원을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나 일반행정 분야

12. 통반장 쓰레기봉투 중복 지급 [신포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수수료의 면제)에 의하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수수료의 면제 대상자)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장 및 반장에 대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나,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는 **통*반장 유**(배우자 전**) 세대에 대해 2016. 10월과 11월 총 2회(240ℓ)에 걸쳐 통반장 지급용 봉투와 수급자 배부용 봉투를 중복 지급하였고,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통*반장 김** 외 1명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총 2,400ℓ에 걸쳐 통반장 지급용 봉투와 수급자 배부용 봉투를 중복 지급하여 1명당 월 60리터를 초과 공급한 사실이 있음.

13.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신포동, 신흥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또한,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3조에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강사는 강의계획서와 이력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강의 계획서 및 이력서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우수한 자원 봉사자 또는 강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7조(운영계획)에 의하면, 위원장은 매년 주민의 문화·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컴퓨터 교실 외 9개 프로그램)과 2018년 프로그램 강사 계약 체결 시 강의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심의 없이 강의계약서만 일괄 계약하여 강사 채용을 추진하였고, 매년 사업계획 수립 및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에 보고해야 함에도, 2017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 이후 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8년에는 보고기간을 지나서 위원회 심의 및 구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14. 민방위 자체교육훈련 인정대상자 관리 소홀 [신흥동, 을목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제1항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조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장은 학생이나 현역입영대상자, 향토예비군 등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 또는 편성되는 자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을 기점으로 관련공부 및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민방위대 제외 및 편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교육훈련 인정 등) 및 민방위대 편성지침(국민안전처) 의거 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항공종사자 등 해당하는 자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같음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민방위 교육지침 제1항 제1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민방위 자체교육을 서면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 03.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가 된 최**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현재까지 자체교육대상자로 처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온 사실이 있으며
- 율목동 행정복지센터는 2015. 10. 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가 된 정**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현재까지 자체교육대상자로 처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온 사실이 있음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김**에 대하여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없이 종료 일자를 미등록한 상태로 교육인정처리를 하는 등 자체교육 인정자 자원관리에 소홀히 해 온 사실이 있음

1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처리 부적정 [신흥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여 징수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징수한다.

제24조(시행규칙 등)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고 신흥동 및 용유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3급이상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용료 등의 50%를 감면할 수 있으나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3급 이하의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50% 감면처리 하는 등 28건 285,000원의 수강료를 부적정하게 감면 처리하였고,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3건 195,000원의 수강료를 부적정하게 감면 처리한 사실이 있음.

16. 차량유지관리 부적정 [운서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인천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규칙」 제21조(기록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부터 13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대장의 내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서동과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관용차량을 정비한 내역을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24건(운서동 12건, 용유동 12건)에 대해 차량관리시스템에 정비내역 입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다 민원행정 분야

17. 인감위임장 작성 확인 소홀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운서동]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232P)에 따라 위임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으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13호 서식에 의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 인적사항, 사용 용도, 위임사유, 관계 및 위임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위임장의 유효 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고, 위임장은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함.

또한, 인감증명 사무편람(233P)에 따르면 위임장은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사고 시 문서감정 대상이 될 때가 많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 불가함.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동에서는 인감증명을 위임에 의한 대리로 발급함에 있어 위임한 날이 누락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및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등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계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운서동
141건	85건	37건	7건	12건

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업무 처리 부적정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운서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르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에 따른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고 신청서에 요금계기에 따른 수입증지를 인증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자연훼손, 보안기능추가)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수수료 면제)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되, 종전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함. 만일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실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같이 작성하고 주민등록 시스템에 분실처리를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사유에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보안기능 추가로 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후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함.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동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82건에 대해 분실신고서와 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절차 없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고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처리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구 분	계	소인 누락	서명 누락	수수료 미부과 (분실)	중 미회수	수수료 착오부과 (수급자)	사유 미기재
신포동	22	-	-	-	21	1	-
신흥동	43	2	28	1	2	1	9
운서동	9	-	-	9	-	-	-
율목동	8	-	1	6	1	-	-

19.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신흥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8,400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1항 1호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이며, 2017 주민등록 사무편람(173쪽)에 따라 전입세대열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당해 전입세대열람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해야 하나,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사기간동안 총 28건에 대해 수수료 300원을 부과하지 않아 총 8,4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20.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인증처리 부적정 [운서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회당 600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감증명 사무편람」(2017. 2월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인감변경(방문·서면) 신

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구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한다. 또한 인감증명신고대장 작성은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는 2015. 10. 1.부터 2018. 3. 31.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김** 등 총 163건에 대하여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의 ‘수수료 첨부란’에 신고 당일 수입증지가 아닌 최대 39일을 지연하여 인증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한 사실이 있음

21.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운서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4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는 인감증명발급 신청자 김** 외 46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지 않았고, 대리인 정** 외 11인의 무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22.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리 부적정 [울목동,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급 32천원, 추징 40천원)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닌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에는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일체정리 기간에 자진 납부 시 100분의 50이내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

- 율목동 행정복지센터는 심** 등 2명에 대해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를 부과(기간내 미신고)하면서 1분기 주민등록 일체정리 기간(2017. 1. 16 ~ 3. 24)에 재등록 50% 경감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진납부에 의한 경감 50%만 적용하여 총 24,000원의 과태료를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고,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이** 등 3명에 대해 주민등록재등록(신청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등록 일체정리 기간에 따른 자진 납부 시 감경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규정 보다 총 32,000원의 과태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라 복지행정 분야

23. 청소년증 교부 및 관리 소홀 [신포동, 신흥동, 율목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제4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청소년증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보관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소년증을 보내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및 2017년 청소년 사업안 내 (여성가족부) 지침 p.109에 따르면 재발급 신청을 받은 후 훼손된 청소년증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기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파기해야 함.

-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 동에서는 총 10개의 청소년증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그 중 7건은 수령안내 등을 통지 한 후 폐기처리 했어야 하나, 수령안내 통지 등 관련 절차 이행 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등 청소년증 교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온 사실이 있음

24. 통합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이용 제공 동의 누락 [신흥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2017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서(보건복지부 지침)」 52페이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동의에 따르면 통합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시에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책임·의무와 함께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간, 이용거리, 비밀보장의 원칙 등 서비스 제공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이용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 동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서비스 제공계획 및 점검표’를 출력하여 하단의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동의란에 공동 서명하고, 서비스 제공계획 변동 시에도 반드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2016. 10월 ~ 2018. 3월 현재까지 김** 외 18명의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욕구조사 전 실시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만 받고 계획수립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5.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부적정 [율목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 및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자동차의 명의에 따라“본인용”과“보호자용 ”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함.

또한,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11.27)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그렇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율목동 행정복지센터는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의해 지체척추 5급 대상자로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야 할 대상자에게 주차불가 표지로 착오 발급한 사실이 있음.

26.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소홀 [용유동]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②」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연속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표지나 훼손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무단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선** 등 9명에 대해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자동차 표지판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자체 정비를 통해 회수 조치하지 않는 등 자동차 표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Ⅲ

우수사례

1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신포동]

□ 목 적

- 신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7. 11. 30.(목) 10:00 ~ 11:40
- 장 소 : 인천 중구 한중문화관
- 참가대상 :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9개 팀
- 주요내용 : 기념식, 프로그램 발표회
- 주 최 : 신포동 주민자치위원회
- 소요예산 : 4,000천원 범위 내(주민자치센터 기금)

□ 추진실적

- 참여 인원 : 200여명(신포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9개 팀 및 지역 주민 등)
-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회 개최
- 경연이 아닌 발표회로 순위 없이 격려 및 화합의 장으로 마련

□ 기대효과

-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화합의 장

□ 관련사진



□ 목 적

- 교복지원 서비스(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세대 아동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

□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책정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세대의 중·고등학교 진학 예정 청소년 6명
- 운영내용
 - 관내 교복업체(INY클럽)와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약 체결을 통한 교복 지원
 -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저소득계층 세대 중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입학 예정 청소년 세대 6인 선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교복업체에 교복비 지급 후 대상 청소년 교복업체(INY클럽)에서 직접 교복 맞춤 및 수령

□ 기대효과

- 관내 협약, 협의체 기금 활용을 통하여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 대상자들이 직접 동을 방문하거나 쿠폰을 발행하지 않아도 교복 후원처에서 직접 교복을 맞추어 예민한 나이의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운영

□ 관련사진



□ 목 적

- 영종도 주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자긍심과 지역발전을 도모

□ 개 요

- 일 시 : 2017. 08. 31(목) 17:00 ~ 21:00
- 장 소 : 영마루공원 (중구 영종대로 77)
- 참여인원 : 2,000여명 (초청 내빈 및 주민 등)
- 소요예산 : 36,987천원
- 주요행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 공연 및 행사

□ 추진실적

- 2017. 5. 19 : 제19회 영종도 주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계획 수립
- 2017. 5. 24 ~ 7. 27 : 영종도 주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회의 개최(5회)
- 2017. 7. 6 : 행사 대행 용역 계약
- 2017. 7. 7 : 표창 계획 수립
- 2017. 8. 31 : 제19회 영종도 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기대효과

- 영종 지역 주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행사 개최로 정주 의식 고취
-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참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

□ 사진자료



□ 목 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평소 배우고 익힌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별 경쟁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화합과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017. 12. 15(금) 14:00 ~ 17:00
- 장 소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
- 참 여 : 프로그램 수강생, 지역주민 등 200여명
- 심 사 : 운서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심사위원 5명

□ 추진실적

- 경연대회 총 17개팀
 - 경 연 : 9개팀(기타와우쿨렐레, 댄스스포츠중급, 뽕리댄스, 노래교실, 민요와장구교실, 실버댄스, 다이어트로빅, 노인건강체조, K팝댄스)
 - 전 시 : 6개팀(컴퓨터초급, 컴퓨터중급, 수목화, 어린이한자, 레고블럭과 사고력보드, 홈카페클래스)
 - 경 기 : 2개팀(탁구교실초급, 중급)

□ 기대효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솜씨를 뽐낼 기회를 마련하여 수업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및 주민 여가 증진에 기여
- 수강생들과 강사,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중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자리매김

□ 목 적

- 제17회 용유·무의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문화적 소외감 해소

□ 개 요

- 일 시 : 2017. 11. 2.(목) 14:00 ~ 17:00
- 장 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
- 참여인원 : 500여명
- 소요예산 : 25,080천원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축하공연(주현미, 서정아, 주민자치센터 민요공연 등)

□ 추진실적

- 2017. 7. 27. : 제17회 용유·무의도의 날 기념행사 계획 수립
- 2017. 8. 10. : 계약체결
- 2017. 8월 ~ 9월 : 행사추진관련 회의 운영
- 2017. 11. 2. : 제17회 용유무의 주민의 날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용유·무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일체감 형성 및 애향심 고취에 기여

IV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해당기관(부서) 통보
 - 시정·회수 등 : 30일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

붙임 수감기관별 처분요구서 각 1부. 끝.